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Q&A**



목 차



I. 법 해석 관련 1

1. 총론 및 기준 1

- 01. 이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1
- 02. 부정구매, 부정판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
- 03.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 04. 부정판매 성립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
- 05. 1매만 구입가 이상으로 판매해도 부정판매가 되는가요? 4
- 06. '부정구매'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5
- 07. 영화 티켓이나 숙박권도 신고 대상인가요? 6
- 08. 팬미팅 티켓도 신고 대상인가요? 7
- 09. 이스포츠 티켓도 신고 대상인가요? 8

2. 과징금 부과 등 처벌 9

- 10.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9
- 11. 가족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11
- 12. 압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12
- 13. 구매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도 처벌받나요? 12
- 14. 매크로를 쓰지 않고 예매한 후 웃돈을 붙여 파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12
- 15. 팬클럽 선예매 권한이나 계정 아이디를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13
- 16.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 13
- 17. 프로야구 시즌권이나 페스티벌 입장권의 일부만 판매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14
- 18. 외국인, 해외 거주자들도 처벌 대상인가요? 15
- 19. 소액판매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할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범법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16

3. 신고 및 포상금 17

- 20.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17
- 21.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8
- 22.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19
- 23.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도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20

II. 신고 절차 관련 21

- 24. 암표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접수할 수 있나요? 21
- 25. 예매번호, 좌석번호를 알아야만 신고할 수 있나요? 22
- 26. 신고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22
- 27. 암표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23
- 28. 익명으로도 암표 신고가 가능한가요? 24
- 29. 신고 내용을 실수로 잘못 제출했을 경우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나요? .. 24
- 30.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24

※ <붙임> 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I. 법 해석 관련

1. 총론 및 기준

01. 이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 기존 법령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하여 구매한 입장권 등의 판매만을 금지하였으나,
 - 법령 개정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방해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부정구매)
 -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 또한 부정판매를 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그 외,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생기며,
 - 신고기관을 지정하여 자료 제출요청, 수사기관 자료 제공 등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02. 부정구매, 부정판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구매 : ①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②재판매를 목적으로 ③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 부정판매 : ①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가 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③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④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공연법」 제4조의2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03.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조항 >

「공연법」 제4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공연법」 제42조의2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공연법」 제4조의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몰수·추징) ④ 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04. 부정판매 성립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은 개정 법령의 문언 및 상습성·영업성에 대한 판례와 과징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1매만 구입가 이상으로 판매해도 부정판매가 되는가요?

- 1매를 1회만 판매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습 또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정한 이익에 대한 사회통념, 초과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 부정판매 행위의 계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된다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예외적인 영업성에 대해서는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06. '부정구매'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 최초 판매자가 무엇을 '공정한 구입' 과정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최초 판매자가 1인당 구매 매수 제한을 정하였으나 계정 등을 도용하여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매크로 등 악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시간을 우회하여 구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7. 영화 티켓이나 숙박권도 신고 대상인가요?

- 암표 방지를 위한 개정 공연법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에 대해서 적용되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공연법에서 공연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고 정의되며,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동경기’를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운동경기’는 1. 일정한 규칙에 따라 2. 개인 또는 단체가 3. 신체활동을 통해 승패·순위·기록 등을 겨루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영화 티켓과 숙박권은 공연과 운동경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암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입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화암표 관련 내용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 내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응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08. 팬미팅 티켓도 신고 대상인가요?

- 압표 방지를 위한 개정 공연법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에 대해서 적용되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공연법에서 공연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고 정의되며,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동경기’를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운동경기’는 1. 일정한 규칙에 따라 2. 개인 또는 단체가 3. 신체활동을 통해 승패·순위·기록 등을 겨루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적인 팬미팅은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으로 보아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운동경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09. 이스포츠 티켓도 신고 대상인가요?

- 압표 방지를 위한 개정 공연법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에 대해서 적용되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공연법에서 공연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고 정의되며,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동경기’를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운동경기’는 1. 일정한 규칙에 따라 2. 개인 또는 단체가 3. 신체활동을 통해 승패·순위·기록 등을 겨루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이스포츠 경기는 공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운동경기 요소에 부합하며, 이스포츠가 대한체육회의 준회원단체종목인 점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 경기 티켓도 스포츠 압표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팬미팅 행사, 게임체험 행사 등 실제 승부가 없는 행사는 제외됩니다.

2. 과징금 부과 등 처벌

10.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은 총 판매금액의 2배~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등이 참작될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공연법 시행령 [별표 1]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 >

- 공연의 경우 판매금액 **5만원 이상, 2매 이상** 부정판매 시 과징금 부과, 스포츠의 경우 판매금액 **2만원 이상, 2매 이상** 부정판매시 과징금 부과
-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 문체부 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함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경우** 등은 과징금 부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함

○ 공연법

판매금액 판매매수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2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매	2배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10배
3매	2배	3배	4배	5배	7배	8배	10배	10배	10배
4매	3배	4배	5배	6배	8배	10배	12배	15배	15배
5매	3배	4배	5배	7배	10배	12배	15배	18배	20배
6매	4배	5배	6배	9배	12배	15배	18배	20배	25배
7매	4배	6배	8배	10배	13배	18배	20배	25배	30배
8매	5배	7배	9배	12배	15배	20배	23배	30배	35배
9매	5배	8배	10배	13배	18배	23배	25배	35배	40배
10매 이상	5배	8배	10배	15배	20배	25배	30배	40배	50배

※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판매금액 판매매수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2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매	2배	5배	8배	11배	14배	19배	24배	29배	30배
3매	4배	7배	10배	13배	16배	21배	26배	30배	30배
4매	6배	9배	10배	15배	18배	23배	28배	30배	30배
5매	8배	11배	14배	17배	20배	25배	30배	35배	40배
6매	10배	13배	16배	19배	22배	27배	32배	37배	40배
7매	12배	15배	18배	21배	24배	29배	34배	39배	40배
8매	14배	17배	20배	23배	26배	31배	36배	40배	40배
9매	16배	19배	20배	25배	28배	33배	38배	40배	40배
10매 이상	18배	21배	24배	27배	30배	35배	40배	45배	50배

※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1. 가족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 부정판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예컨대, 공연 입장권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정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최측에서 약관 등을 통해 티켓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 티켓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 요건】

①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가 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③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④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2.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는 암표상에게 입장권을 구매한 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13. 구매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도 처벌 받나요?

- 자신이 구매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 요건】

①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가 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③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④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4. 매크로를 쓰지 않고 예매한 후 웃돈을 붙여 파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할 경우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 요건】

①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가 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③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④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5. 팬클럽 선예매 권한이나 계정 아이디를 돈을 받고 양도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6.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

- 무료로 받은 초대권이라 하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 요건】

①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가 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③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④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7. 프로야구 시즌권이나 페스티벌 입장권의 일부만 판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8. 외국인, 해외 거주자들도 처벌 대상인가요?

-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여 부정거래를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속지주의에 따라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다만,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하는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법령이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의미

19. 소액 판매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할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가 범법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법률상 ① 상습 또는 영업으로 ②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③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만 규제하고 있어 상습성, 영업성을 띠지 않는 선의의 사례일 경우에는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취소 규정은 약관별로 상이하나, 단순 변심 환불이 어려운 해외 주요 사례와 달리 한국은 통상적으로 행사 당일 또는 전날까지 티켓 취소가 가능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 요건】

①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가 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③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④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신고 및 포상금

20.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사안에 따라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게시물 노출 제한 통보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고기관이 통보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개정법령 중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의 조항 참고 :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4조의2

21.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고내용이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형의 확정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의 세부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신고포상금 범위】

-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22.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 기존 법령에서는 매크로를 활용한 암호의 판매만을 금지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는 부정구매와 매크로 활용유무와 관계없는 부정판매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매크로를 활용한 암호의 판매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나, 개정법을 통해 새로 규정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를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23.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도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 포상금은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법령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상 부칙】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신고 절차 관련

24. 압표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접수할 수 있나요?

-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압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압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연과 스포츠의 신고기관이 다르므로, 신고하려는 압표 분야를 확인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연 신고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 신고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25. 예매번호, 좌석번호를 알아야만 신고할 수 있나요?

- 예매번호 또는 좌석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압표 의심 정황이 있고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매번호, 좌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더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26. 신고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신고가 접수되면 ① 접수 → ② 처리 중 → ③ 종결(검토 완료) 또는 처리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암표 거래 의심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수사기관에 의뢰 등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후, 웹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 암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암호 신고 시 거래글 캡처 및 판매자의 계좌번호,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 등 구체적인 부정거래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제출 자료에 아래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될수록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일부 잘라내거나 편집하면 게시물의 출처와 시각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캡처 전체화면과 원본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 게시물 정보: 판매처·통신판매중개업자(거래 플랫폼)명, 게시물 주소(URL), 판매자 ID·닉네임, 게시 일시, 경기·공연명, 좌석·판매매수, 정가·판매가가 보이도록 캡처
- 거래·대화자료: 판매자와의 채팅, 문자, 이메일, 거래조건, 계좌·결제정보, 송금내역 등
- 입장권·예매자료: 예매내역, 예매번호, 좌석번호, 정가, 구매 일시, 구매수량 등 알고 있는 정보
- 부정구매 정황자료: 자동구매 프로그램의 판매·사용 게시물, 반복·대량 구매 정황, 비정상적인 구매과정과 관련된 화면·메시지 등

28. 익명으로도 암호 신고가 가능한가요?

- 허위 신고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하여 최초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신고자의 신원은 외부 및 피신고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29. 신고 내용을 실수로 잘못 제출했을 경우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나요?

-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하시기 전 작성하신 내용과 첨부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등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

<신 설>

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판매일시, 구매·판매가격, 구매·판매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 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

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

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

<신 설>

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
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생략)
<신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4조의2제2항을</u> 위반한 자 ~ 6. (생략) <신설> 제4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신설> 2. ~ 6. (생략) ④·⑤ (생략)	<u>계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제41조(벌칙) ----- ----- -----. <u>제4조의2제1항을</u>----- ~ 6. (현행과 같음) <u>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호에</u>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행과 같음) <u>제4조의3제3항을</u> 위반하여 <u>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

<신 설>

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판매일시, 구매·판매가격, 구매·판매수량 등)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등)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등)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
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
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신 설>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신
설>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생략)

<신설>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에-----

-----.

제49조의2(벌칙) -----

-----.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2.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한 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신고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u>
제5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3(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법 제 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구매(이하 “부정구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를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 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 구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
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
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
출할 것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
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
한 본인 확인을 할 것
-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판매(이하 “부
정판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 판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된 게시물등이 바목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관에 제출할 것

바.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

<신 설>

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사. 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제3조의4(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법 제4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신 설>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4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제3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

----- 별표
1의2-----.

다.

② (생략)

제9조의4(안전교육) ①·② (생략)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안전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표 1의3과 -----.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 별표 1의4 -----.

제2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

만원 이내

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 관련)

1.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 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은 부정판매한 입장권등의 판매가격과 판매매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판매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다. 가목에 따른 판매매수는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판매가격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의 수량으로 한다.

2. 과징금의 부과기준

- 가.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배수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판매금액 판매매수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2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매	2배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10배
3매	2배	3배	4배	5배	7배	8배	10배	10배	10배
4매	3배	4배	5배	6배	8배	10배	12배	15배	15배
5매	3배	4배	5배	7배	10배	12배	15배	18배	20배
6매	4배	5배	6배	9배	12배	15배	18배	20배	25배
7매	4배	6배	8배	10배	13배	18배	20배	25배	30배
8매	5배	7배	9배	12배	15배	20배	23배	30배	35배
9매	5배	8배	10배	13배	18배	23배	25배	35배	40배
10매 이상	5배	8배	10배	15배	20배	25배	30배	40배	50배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 2)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u> <u><신 설></u>	제2장 <u>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u>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 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 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 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에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

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법 제 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구매(이하 “부정구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를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구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이하 “부정판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

시물등을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신고기관에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
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
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
판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
리 알릴 것

마.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
된 게시물등이 바목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
우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
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

<신 설>

관에 제출할 것

바.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사. 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제4조의3(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법 제6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 설>

찾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6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

<신 설>

<신 설>

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제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

4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

건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

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

1.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은 부정판매한 입장권등의 판매가격과 판매매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판매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다. 가목에 따른 판매매수는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판매가격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의 수량으로 한다.

2. 과징금의 부과기준

- 가.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배수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판매금액 판매매수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2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매	2배	5배	8배	11배	14배	19배	24배	29배	30배
3매	4배	7배	10배	13배	16배	21배	26배	30배	30배
4매	6배	9배	10배	15배	18배	23배	28배	30배	30배
5매	8배	11배	14배	17배	20배	25배	30배	35배	40배
6매	10배	13배	16배	19배	22배	27배	32배	37배	40배
7매	12배	15배	18배	21배	24배	29배	34배	39배	40배
8매	14배	17배	20배	23배	26배	31배	36배	40배	40배
9매	16배	19배	20배	25배	28배	33배	38배	40배	40배
10매 이상	18배	21배	24배	27배	30배	35배	40배	45배	50배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 2)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